

< 별지 1 >

##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

수신자

(경유)

제 목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

사 건	
당 사 자	
자료재제출명령 내 용	
이행기일	
불 이 행 내 용	
부 과 예 정 일	
비 고	

귀하(업체)가 우리 위원회의 시정조치명령을 년 월 일까지 이행하지 아니하여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51조의2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오니, 위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이 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 만약, 이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게 됩니다.

###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

★조사관

협조자

시행 ( ) 접수 ( )

우 /

전화 /전송 / /